

제314회 임시회

2012.9.21(금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「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2. 9. 21 (금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김도경 의원 외 6명

나. 발의일자 : 2012년 8월 31일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9월 4일

라. 상정일자 : 2012년 9월 11일

(제3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도경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어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조항의 용어를 개정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‘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’→‘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’으로, ‘향토기업’→‘충북기업’으로 용어 개정(안 제4조, 안 제7조, 안 제8조)
- 일부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(안 제11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전문위원 : 송장섭)

- ‘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어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조항의 용어를 개정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 중 “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”을 “자랑스러운 충북 기업인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향토기업”을 “충북기업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 중 “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”을 “자랑스러운 충북 기업인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도내 공공기관 및 도민에게 이를 구매하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~ 제3조(생 략)	제1조 ~ 제3조(현행과 같음)
제4조(예우 및 지원대상) ①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업이나 기업인(이하 "우수기업인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4조(예우 및 지원대상) ① ---- ----- ----- -----.
1.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	1. ----- -----
2. ‘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’으로 지정된 우수기업인	2. ‘자랑스러운 <u>충북기업인</u> ’--- -----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제7조(기업 육성) 도지사는 기업 활동 촉진과 <u>향토기업</u> 육성을 위하여 우수기업인을 선정하여 지원·육성할 수 있다.	제7조(기업 육성) ----- ----- <u>충북기업</u> ----- ----- -----.
제8조(선정 및 지정 등) ① 매년 우수 기업인 선정인원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	제8조(선정 및 지정 등) ① ----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<p>1. 제4조제1항제2호의 ‘<u>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</u>’은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 등을 둔 기업으로서 10년 이상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 중 5명 이내</p> <p>2. ~ 3. (생략)</p> <p>제11조(판로 지원) ① (생략)</p> <p>② <u>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및 도민에게 향토제품을 구매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	<p>1. ----- ‘<u>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</u>’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판로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도내 공공기관 및 도민에게 이를 구매하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